

중소기업을 위한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이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본금, 기업의 규모, 종업원수, 생산량, 판매량 등이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하며 그 규모란 한 국가의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시장경쟁력 등이 취약하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 창업지원
2. 투자촉진 지원
3.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4. 사업안정 지원
5. 지방이전 지원
6. 구조조정 지원
- (1) 국세
- (2) 지방세(조특법 §119 및 §120)
7. 기타 세법상 우대규정

1. 창업지원

대상세목	제목	내용	근거법령
법인세 소득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조특법 §6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고용창출형창업기업(5-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	조특법 §30의 2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직전연도보다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일정세액을 상기의 감면기간 중 감면세액에 추가하여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취득일·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감면세액 추정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설립의 등기시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특법 §119, §120, §121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감면세액 추정	지법 §280 ④

2. 투자촉진 지원

대상세목	제목	내용	근거법령
법인세 소득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 - 대상자산 : 사업용 자산, POS,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조특법 §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 대상자산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SCM, CRM	조특법 §24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 - 대상자산 : 환경보전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수탁기업체의 검사대·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	조특법 §25

		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 대상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절수기기	조특법 §25의 2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조특법 §26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취득금액의 7% - 대상자산 : 사원용 임대주택, 종업원기숙사,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조특법 §94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산업단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2.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이하 ‘단지’라 한다)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단지 조성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다음의 감면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② 신·증축으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③ 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는 50% 경감,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경감. 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p>※ 상기 1, 2의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 이</p>	지법 §276

		<p>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감면세액 추징</p> <p>3.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단지 및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p> <p>※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시설을 개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감면세액 추징</p>	
	협동화사업 등	<p>1.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50% 경감</p> <p>※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p> <p>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사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50% 경감</p> <p>※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감면세액 추징</p> <p>3.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집적시설의 경우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적용시 증과배제</p>	지법 §280 ① 내지 ③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일부 자치단체 추정규정 있음)	각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아파트형공장	1.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일부 자치단체 추정규정 있음) 2. 중소기업자가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일부 자치단체 추정규정 있음)	각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농공단지 대체입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등	각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3.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대상세목	제목	내용	근거법령
법인세 소득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수입금액의 3% 또는 5%	조특법 §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세액공제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와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 중 선택가능	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조특법 §1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특허권 등 기술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조특법 §12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정	지법 §282

4. 사업안정 지원

대상세목	제목	내용	근거법령
법인세 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15%(소기업 : 10%~30%)를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의료업 등 : 5%(소기업 10%) · 수도권내 소기업 : 20%(지식기반사업 중 기업은 10%) · 수도권외 소기업 : 30%(중기업 15%) 	조특법 §7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이 있는 경우, 0.3%(지급기한 30일 이내) 또는 0.15%(지급기한 31일~60일) 세액공제 (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조특법 §7의 2
	최저한세 우대적용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를 최저한세로 함	조특법 §132
사업소세	사업소세 면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비부과 -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비부과 	지법 §249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 ※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정	지법 §278 ②
등록세	사내복지기금	사내복지기금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면제	지법 §278 ④

5. 지방이전 지원

대상세목	제목	내용	근거법령
법인세 소득세 농특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63 농특세법 §4 12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50% 감면 -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64 농특세법 §4 12호
취득세 등록세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본점 등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이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법 §274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법 §275

6. 구조조정 지원

(1) 국세

- ①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조특법 §31)
- ②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1의 2)
- ③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지원세제(조특법 §33)
- ④ 중소기업 금융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조특법 §34)
- 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조특법 §41)
- ⑥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조특법 §47의 4)

(2) 지방세(조특법 §119 및 §120)

① 법인합병과 영업의 전부양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 면제(법인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 §110에 의하여 비과세)

② 중소기업간의 통합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간의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③ 현물출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④ 법인의 현물출자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과 주식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⑤ 법인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⑥ 자산교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동종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⑦ 사업의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추정

7. 기타 세법상 우대규정

대상세목	제목	내용	근거법령
법인세 소득세	기본접대비한도 확대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소법 §35, 법법 §25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일반기업 1월 ⇒ 중소기업 45일	법법 §64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상시고용인 1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반기별 납부가능	소법 §12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게 적용(2~4%)	부법 §26

※ 상기 내용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과 그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